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2000. 04. 20 개정 2008. 02. 01  
 개정 2014. 03. 01 개정 2014. 07. 23  
 전문개정 2016. 02. 04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08. 27 개정 2018.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건학 이념과 대학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내·외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동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총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정부서 및 제 위원회 등에 대학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위원 중 1~2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상근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학의 미래전략 방향과 관련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매 학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미래전략 방안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1. 대학의 중·장기 미래전략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대외협력 및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세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특성화)에 대한 성과평가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회의 기록, 경비 지출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의2 (연구원) ① 위원회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은 총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8. 10. 29.)

② 연구원은 제4조에 대하여 연구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다. (신설 2018. 10. 29.)

제7조(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상근하는 위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수당,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내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받은 예산은 교비회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원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결산 시에는 집행사항을 정산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